

수 신: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제 목: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2024년 9월 30일

대표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육정미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류종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숙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정일균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대구광역시의회	허시영	의원 (서명 또는 날인)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육정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73
----------	------

발의년월일 : 2024. 9. 30.

발의의원 : 육정미, 김정옥,  
김태우, 류중우,  
박종필, 윤권근,  
이재숙, 임인환,  
정일균, 하중환,  
허시영 의원  
(11명)

## 1. 제안 이유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통해 대구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이 매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7조)
- 라.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이행 조치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민관협력기구는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 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